

1. 개정이유

디자인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7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79조 변경)

○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특허법·상표법 시행규칙과 정합하여 하나의 조문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9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거조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제4항 및 제5항,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통해 증인신문, 현장검증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자는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증거의 첨부) ① ~ ③ (생략)	제75조(증거의 첨부) ① ~ ③ (생략)	제75조(증거의 첨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증인신문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
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
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
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
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